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학 교 안 전 사 고 예 방 및 보 상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 준용하고 있는 「국가배상법」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본 법 개정(법률 제20669호, 2025. 1. 21. 공포, 2025. 7. 22. 시행)에 따라 학교장의 공제사업 안내 방법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취업가능 기간에 군 복무가능성도 포함하여 산정(안 제15조)

- 1) 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도록 개정

나. 시행령 본문에 장해등급 세부기준 고시 명시(안 제16조제1항, 제5항)

- 1) 「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」 고시의 실효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해 현재 별표 2의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에 명시
- 2) 별표 2의 주석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은 「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」 고시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

다.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개정(안 제19조 별표 5 및 별표 6)

- 1) 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 시 미혼자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
- 2)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가산·감액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등은 변경전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주석 내용을 명확화

라.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공제사업을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구체화(안 제20조의3 신설 및 조문번호 변경)

- 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
- 2) 현행 제20조의3(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)은 제20조의4로 변경

마.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구체화(안 제22조의3 신설)

- 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3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

바.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(안 제24조의2 신설)

- 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2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6. 4. ~ 7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.

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.

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, 제20조의3, 제22조의3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안내는 피공제자나 보호자등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

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안전성, 보안성, 접근 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안내해야 하는 내용에는 공제급여의 청구방법, 처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22조의3(공제료 산정기준 등)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급별 1인당 기준 공제료
2. 공제료 산출방식
3. 그 밖에 적정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공제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
제24조의2(차입 또는 일시 차입) ① 공제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차입 사유
2. 차입처
3. 차입금액

4. 차입조건

5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

6.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

별표 2의 주석을 삭제한다.

별표 5 나목 중 “자를 포함한다), 미혼자”를 “사람을 포함한다), 미혼자(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(주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”을 “본인에 한하여”로, “50퍼센트”를 “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”로, “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고, 주석 3번을 추가한다.

3.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“미혼자(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)”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.

별표 6 나목 구분란 나목 중 “자를 포함한다), 미혼자”를 “사람을 포함한다), 미혼자(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(주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”을 “본인에 한하여”로, “50퍼센트”를 “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”로, “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”를 “20퍼센트”로 하고, 주석 3번을 추가한다.

3.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“미혼자(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)”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취업가능기간) 법 제34조 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(이하 “장애급여”라 한다)를 법 제37조제1항 및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(이하 “유족급여”라 한다)를 법 제39조제1항 및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15조(취업가능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사고 당시 「병역법」상 군복무기간, 피공제자의 군복무가능성,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(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만한다)	<삭제>
제16조(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) ① 제15조에 따라	제16조(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) ① -----

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
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
별표 2와 같다. <후단 신설>

② ~ ④ (생략)

<신 설>

제20조의3 (생략)

<신 설>

----- . 이 경우 신체부위
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
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
시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
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
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
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.

제20조의4 (현행 제20조의3과 같음)

제20조의3(학교안전공제 사업의
안내)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
따른 안내는 피공제자나 보호
자등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
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
밖에 안전성, 보안성, 접근 편의
성 등을 갖춘 방법 중 어느 하
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
안내해야 하는 내용에는 공제급
여의 청구방법, 처리절차 및 지
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
되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2조의3(공제료 산정기준 등)

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급별 1인당 기준 공제료
2. 공제료 산출방식
3. 그 밖에 적정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공제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
제24조의2(차입 또는 일시 차입)

① 공제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차입 사유
2. 차입처
3. 차입금액

4. 차입조건

5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
기간

6.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
에 필요한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65